

주택냉방시설 설치 신청 안내서

『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냉방시설(에어컨) 설치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건물 소유주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동봉된 회신용 봉투를 이용해 *22. 12. 27(화)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도착접수일 기준

신청세대가 예산을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자는 다음 연도에 설치사업이 시행되며, 신청마감일 이후에도 신청접수는 가능하나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초과될 경우 다음 연도 설치대상으로 접수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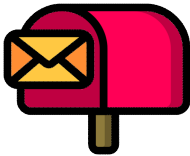
설치 대상

- 소음대책지역 내에 위치하며 소음대책지역 지정·고시일인 '18. 5. 29 이전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주거용도(또는 의료·교육·공공시설) 건축물에 한해 건물소유주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. 공공시설은 노유자시설을 의미합니다.
 - ※ 건축물대장 기준 주택 용도가 아닌 경우(지하실/대피소/물탱크실/창고/축사 등)나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은 사업대상이 아닙니다.
- 소음대책지역 내 다가구 주택의 경우, 거주하는 소유주 및 동일 주소 내 독립된 주거공간에 전입 신고된 임차세대 모두 냉방시설 설치 대상입니다.
 - 다만, 다가구주택의 경우 여러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공간 거주여부와 독립세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세대 열람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신청 안내

- 신청방법 : 아래 신청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

① 우편 신청



동봉된 무료 우편봉투 활용

② 이메일·Fax 신청



신청서 작성하여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첨부

③ 온라인 신청



공항소음포털에서 신청

- ① 우편 신청 : 동봉된 회신용 봉투 사용하여 신청서 발송(우표부착 불필요, 무료)
 - 보낼서류 : 냉방시설 신청서 1부
 - ※ 한 건물에서 여러 세대 신청시 : 신청서, 전입세대 열람서류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등본
 - 보낼주소 : 제주시 공항로 2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4층, 기계시설부
 - ② 이메일·팩스 접수 : 신청서 작성하여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첨부하여 접수
 - E-mail : supportcju@airport.co.kr Fax : 064-797-2576
 - ※ 메일제목 : “냉방 전화번호” 기재, (메일제목 예시) 냉방 010-1234-1234
 - ③ 온라인 접수 : 소유주가 공항소음포털(www.airportnoise.kr)에 접속(회원가입)하여 신청서 작성 → 구비서류(건축물대장, 세대별 등본) 첨부 후 신청
- 문의전화 : 기계시설부 ☎ 064-797-1801~4, 064-797-1854 **뒷면 계속!!!**

설치 일정

- 냉방시설 제조사의 당해 연초 신제품 모델이 출시된 이후 본 사업을 신청한 가옥마다 방문하여 설치희망 제품을 안내 및 결정하는 **사전조사가 2월부터 진행될** 예정이며, 사전조사를 통해 **최종협의서 또는 취소확인서**를 작성합니다.
-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설치업체를 선정 후 행정처리, 사전교육, 제품수급 등을 마친 후 접수순서 등 효율적인 설치 스케줄링에 따라 **6월부터 8월초까지 설치를 진행할** 예정입니다. 제품별로 **설치시기는 유동적**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설치완료 후 **관리계약서를 작성**하며, 매매 시 관리계약서를 인수인계하여 주십시오.

유의 사항

- 최근 신축된 건물에 **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된 경우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 천장형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할** 목적으로 신청하실 경우 기존 배관과의 추가연결 및 냉매 문제, 천장 배관매립 공사, 천장마감 인테리어 등 시설공사 사유로 **천장형 에어컨 설치**는 불가합니다.
- 단, **실외기실과 천장형 에어컨이 없는 공간이 가까울 경우** 또는 **최고층, 최하층 세대의 경우**는 벽을 천공하여 실외기를 실외기실에 두거나 바닥면, 옥상에 배치하여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 벽걸이 또는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.
- 관련법상 **실외기실이 존재하는 경우 실외기를 외벽에 거치할 수 없는 점**을 유의하십시오.

설치 기준

- 독립세대로서 독립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경우 **1세대 당 1대(실외기 기준)**를 설치합니다. **다가구주택의 경우** 가족구성원이 독립된 공간에 거주하여도 **독립세대로서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한 세대**로 간주합니다.
- 냉방시설 용량은 **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**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 - 냉방용량(kcal/h) = **전용면적(m²)** × 기준 열부하(kcal/m²h)
 - 전용면적 : 「주택법」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정하는 주거전용 면적
 - 기준 열부하 : 공동주택은 106 kcal/m²h, 단독주택은 108 kcal/m²h
- **에너지소비효율**은 1등급 제품이 존재할 경우 **1등급 제품을 우선하여 설치**하며, 모델선정심의를 통해 결정된 **중상급 이상의 당해 연도 최신 사양**을 설치합니다. 단, 정부의 **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상향(2022. 4. 27 적용)**으로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**제조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평형별 최고등급이 1등급이 아닐 수** 있습니다.



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